San Dieguito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

통일된 불만 제기 절차 (UCP)

AR 1312.3 지역사회 관계

교육구 이사회가 기타 교육구 방침에 달리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통일된 불만 처리 절차(UCP)는 첨부한 이사회 방침에 명시된 불만 사항만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준수 담당관

교육구는 아래에 명시된 개인(들), 직위(들) 또는 부서(들)이 불만을 접수, 조정 및 조사하고 주 및 연방 인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정합니다. 해당 개인(들), 직위(들) 또는 부서(들)은 AR 5145.3 - 비차별/괴롭힘에 명시된 준수 담당관으로서 불법적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에 관한 불만과 AR 5145.7- 성희롱에서 명시한 성희롱 관련 불만을 처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Director of Pupil Services 1 Maverick Way Carlsbad, CA 92009 전화 (760) 753 -6491 내선번호 5585 ucp@sduhsd.net

불만 사항을 접수한 준수 담당관은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른 준수 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준수 담당관은 불만 사항에 다른 준수 담당관이 배정된 경우 즉시, 고발자와 피고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준수 담당관이 불만 사항에 대한 공정한 조사나 해결을 방해하는 편견이나 이해 상충이 있는 불만 사항에 대해 준수 담당관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준수 담당관에 대한 불만 사항 또는 준수 담당관이 공정하고 편견 없이 불만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불만 사항은 불만 사항을 조사할 방법을 결정하는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배정된 직원이 교육을 받고해당 직원에게 배정된 불만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프로그램을 관장하는현재의 주 및 연방 법률과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을 포함하여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 및 불만 사항에 대한 결정에도달하기 위한 적용 가능한 기준과 적절한 시정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일을 맡은직원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결정한 대로 법률 고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수 담당관 또는 필요한 경우 적합한 행정 관리자는 조사 중 및 결과가 보류되는 동안임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준수 담당관 또는 관리자가 임시조치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하나 이상의 임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교육감,교육감의 피지명인 또는 적절한 경우 학교장과 상의해야 합니다. 임시 조치는 준수담당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때까지 또는 교육구가 최종 서면 결정을 내릴때까지,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지

교육구의 UCP 방침 및 행정 규정은 교직원 휴게실 및 학생회 회의실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구 학교 및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매년 학생, 직원, 교육구 학생의 부모/보호자, 교육구 자문이사회 위원, 학교 자문이사회 위원, 적합한 사립 학교 공무원 또는 대표 및 기타이해당사자에게 교육구의 UCP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보호 대상 그룹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 금지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여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주된 책임이 교육구에 있다는 설명 및 첨부된 이사회 방침의 "UCP 대상 불만 사항" 항에 명시된 대로 UCP의 대상이 되는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 목록
- 2.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직위, 알려진 경우에는 현재 해당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의 신원, 해당 직원이 조사하도록 배정된 법률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설명

- 3.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을 주장하는 불만을 제외한 UCP 불만은 주장된 위반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
- 4.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불링을 주장하는 UCP 불만 제기는 혐의행위가 발생한 날짜 또는 고발자가 혐의 행위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
- 5.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커리큘럼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
- 6. 만약 고발자가 학생 비용 또는 지방 통제 및 LCAP (Loc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Plan)에 관한 불만을 제기한다면 해당 불만을 뒷받침하는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
- 7. 교육법 84645.7, 48853, 48853.5, 49069.5, 51225.1 항 및 51225.2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탁 청소년, 노숙자 학생, 군인 가족의 자녀 및 현재 교육구에 등록된 전 소년 법원 학교학생의 교육 및 졸업 요건에 대한 표준화된 통지를 게시할 것이라는 설명 그리고 불만처리 절차
- 8. 고발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교육구의 UCP 에 따라 불만 내용이 조사되고 불만 접수 후 60 일 이내에 서면 결정이 고발자에게 발송된다는 설명
- 9. 첨부된 이사회 방침에 명시된 UCP 범위 내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발자는 교육구의 조사 보고서에 대해 교육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에 제기한 불만의 원본의 사본과 교육구의 결정 사본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
- 10. 다음과 같은 경우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을 금지하는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구제 또는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민사법 구제에 대해 고발자에게 조언하는 설명
- 11. 교육구의 UCP 사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

가능한 경우, 교육법 221.66 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통지, 준수 담당관(들)의 완전한 연락처 정보 및 타이틀 나인(Title IX)과 관련된 정보는 교육구 및 교육구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교육구 지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를 포함하여 모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UCP 에 관한 교육구의 방침, 규정, 양식 및 통지에 제공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교육구 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15% 이상이 영어 이외의 단일 기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법 234.1 항 및 48985 항에 따라 교육구의 UCP 방침, 규정, 양식 및 통지가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교육구가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학부모/보호자를 위해 모든 관련 UCP 정보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해야합니다.

불만 제기

불만 사항은 준수 담당관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접수된 불만 사항의 일지를 보관하고 각각에 코드 번호와 날짜 스탬프를 제공해야 합니다. 준수 담당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현장 관리자가 불만사항을 접수한 경우 현장 관리자는 이를 준수 담당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든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발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고발자가 장애 또는 문맹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 직원이불만 제기를 도와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1. 첨부된 교육이사회 방침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해당 주 또는 연방법 또는 규정을 교육구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은 모든 개인, 공공 기관 또는 조직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학생비, 예치금, 부과금 금지 또는 LCAP 관련 요건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불만 사항이 증거 또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여 위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학생 비용 청구 금지 위반에 대한 불만은 학교 교장이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불링을 주장하는 UCP 불만 사항을 제외한 UCP 불만 사항은 주장된 위반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LCAP 와 관련된 불만 사항의 경우, 주장된 위반 날짜는 카운티 교육감이 교육구이사회에서 채택한 LCAP를 승인한 날짜입니다.
- 4. 불법적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은 개인적으로 불법적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특정 부류의 개인이 불법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 또는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개별 학생이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는 불법적인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또는 고발자가 불법적 차별에 대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출 날짜는 고발자가 서면으로 연장이유를 설명하는 요청을 하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정당한 사유로 최대 9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6.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을 주장하는 불만이 익명으로 제기된 경우, 준수 담당관은 제공된 정보의 구체성 및 신뢰성과 주장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조사 또는 기타 대응을 추구해야 합니다.
- 7.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에 대한 고발자 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고발자가 아닌 경우에 기밀 유지를 요청한다면, 준수 담당관은 고발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당 기밀 요청으로 인해 해당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교육구의 능력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요청을 존중하면서, 교육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과 일치하는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대응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재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준수 담당관은 모든 당사자와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성인이 아닌 한 명 이상의 학생과 관련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당사자가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느낄 합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 중재를 제안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들이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준수 담당관은 이 과정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의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준수 담당관은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가 모든 관련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수 담당관은 또한 모든 당사자에게 언제든지 비공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중재 절차가 법의 한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준수 담당관은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발자가 그러한 시간 연장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 방법을 사용하면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구의 일정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중재가 성공하고 불만 사항이 철회되면 교육구는 중재를 통해 합의된 조치만 취해야 합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교육구는 본 행정 규정에 명시된 후속 단계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불만 조사

준수 담당관은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 개시 후 영업일 기준 1 일 이내에, 준수 담당관은 고발자 및/또는 고발자의 대리인에게 불만 사항에 포함된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발자 및/또는 대리인에게 준수 담당관에게 불만 사항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또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 또는 정보는 조사 중 언제든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수행할 때 준수 담당관은 사용 가능한 모든 문서를 수집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받은 추가 증거 또는 정보를 포함하여 불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사용 가능한 기록, 메모 또는 진술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수 담당관은 불만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능한 모든 증인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장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준수 담당관은 주기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조사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보복이나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준수 담당관은 피해자, 위반 혐의자 및 기타 관련 증인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기밀 방식으로 인터뷰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직원이나 법률 고문이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발자가 교육구 조사관에게 문서 또는 기타 증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불만 사항의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기타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만 사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조사관에게 불만 사항의 주장과 관련된 기록 및/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기타 조사를 방해하면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위반이 발생했으며 고발자에게 유리한 구제책을 부과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 일정

고발자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준수 담당관은 아래 "조사 보고서" 항에 설명된 대로 서면 조사 보고서를 준비하여 교육구가 불만 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이내에 고발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불링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의 경우, 피고발자는 고발자가 동의한 일정의 연장에 대해 통지를 합니다.

조사 보고서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해 교육구의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사실 발견.
- 2. 해당 교육구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혐의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제공하는 결론
- 3.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구제책, 학생 비용 불만에 대한 구제책, 교육법 49013 항 및 5 CCR 4600 항을 준수하는 구제책을 포함하여 교육구가 불만 사항에서 타당함을 발견할 때마다 시정 조치
- 4. 교육구가 5 CCR 4610 항에 명시되지 않은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UCP 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의 조사 보고서를 CDE 에 항소할 수 있는 고발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
- 5. CDE 에 대한 항소를 시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

조사 보고서에는 재발이나 보복을 방지하고 후속 문제를 보고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 법률 고문과 협의하여,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한, 조사 보고서의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고발자가 아닌 피해자와 조사 보고서 이행에 관여할 수 있거나, 불만 제기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불링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에서, 혐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 보고서 통지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직접 관련 있는 피고발자에게 부과될 제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이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LEP)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관련된 경우, 고발자가 요청한 경우, 교육구의 응답 및 조사 보고서는 영어와 불만 사항이 제출된 기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주법에 근거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불링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의 경우, 조사 보고서에는 고발자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고발자는 CDE 에 항소를 제기한 후 달력일로 60 일 이내에 명령, 금지 명령 또는 기타 구제책이나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구의 불만 제기 절차 외에 이용 가능한 민사법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2. 60 일 유예는 주 법원에서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하는 불만 사항이나, 연방법에 근거한 차별 불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별, 장애 또는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은 또한 주장된 차별 행위로부터 180 일 이내에 미국 교육부, 인권 사무국(www.ed.gov/ocr)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불만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준수 담당관은 법이 허용하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큰 학교 또는 교육구 환경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시정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교사진,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교육; 학교 방침 업데이트: 또는 학교 분위기 조사 등입니다.

보복이나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과 관련된 불만 사항의 경우, 피고발자에게 전달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책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1. 상담
- 2. 학업 지원
- 3. 건강 서비스
- 4. 피해자가 캠퍼스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 지정
- 5.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 및 유사한 사건 또는 보복을 보고하는 방법
- 6. 피해자가 힘들어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관련된 다른 개인과 분리

- 7. 회복적 정의
- 8. 해당 행위가 중단되었고 보복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사

보복 또는 불법 차별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해 학생을 피고발자로 연관하는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에 대해 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적절한 시정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1. 법이 허용하는 수업 또는 학교에서 전학
- 2. 학부모/보호자 회의
- 3.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 4. 긍정적인 행동 지원
- 5. 학생 성공 팀에 추천
- 6. 법에서 허용하는 과외 활동 또는 정규과목 병행 활동 또는 기타 특권에 대한 참여 거부
- 7.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른 정학, 퇴학 등의 징계 조치

직원이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구는 해당 법률 및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최대, 해고를 포함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또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불링을 구성하는 행동 유형을 교육구는 이를 용납하지 않으며 어떻게 보고하고 대응하는지를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보호자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더 큰 학교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및 기타 개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자 또는 기타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학생비, 예치금 및 기타 요금, 체육 교육 시간, 교육 내용이 없는 과정 또는 LCAP 와 관련된 요구 사항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구는 영향을 받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들에게 주 교육이사회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절차에 따라 구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학생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의 경우, 교육구는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해당 문제를 제기하기 전 1년 이내에 불법적인 학생비 지불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를 구분하고 전액 상환하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항소

UCP 대상인 특정 연방 또는 주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불만에 대한 교육구의 조사 보고서에 불만이 있는 고발자는 교육구의 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CDE 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때에는 교육구에 접수된 불만 사항 원본의 사본 및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한 교육구의 조사 보고서 사본과 함께 CDE 에 보내야 합니다. 고발자는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이의 제기 근거를 지적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1. 교육구가 불만제기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 2. 불만의 주장과 관련하여 교육구의 조사 보고서에는 법의 결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실에 대한 중요한 발견 내용이 부족합니다.
- 3. 교육구 조사 보고서의 중요한 사실 발견 내용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 4. 교육구 조사 보고서의 법적 결론이 법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5. 교육구가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정 조치가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교육구의 조사 보고서가 항소되었음을 CDE 가 통지하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CDE 에 전달해야 합니다.

- 1. 불만을 제기한 원본
- 2. 조사보고서 사본
- 3. 당사자들이 제출하고 조사관이 수집한 모든 메모, 인터뷰 및 문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사 파일 사본
- 4.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
- 5. 교육구의 UCP 사본
- 6. CDE 가 요청한 기타 관련 정보

만약 불만 사항에 의해 제기된 주장(들)을 교육구의 조사 보고서가 잘 다루지 못했다고 CDE 가 통지하는 경우, 교육구는 통지 후 20 일 이내에 CDE 와 항소인에게 원래의 조사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주장(들)을 다루는 수정된 조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정된 보고서는 또한 원래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주장(들)과 관련하여 수정된 보고서에 대해 별도로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9/16 5/17) 3/18

이사회 채택: 2019 년 4월 4일

이사회 개정: 2020 년 8월

27 일 이사회 개정: 2021 년

6월 10일 이사회 개정:

2022 년 8월 25일